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77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임미애·임호선·복기왕

임오경 · 이강일 · 이용우

김문수 · 김남희 · 김정호

이연희 · 송재봉 · 이원택

이광희 · 김동아 · 위성곤

김남근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저율관세할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자문기구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 저율 관세로 수입 가능한 물량 증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있음.

그런데 농산물 수급조절이나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경우 저렴한 수입 농산물 국내 반입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만큼, 직접 이해관계자인 농산물 생산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하위 법령에 규정된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되, 그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하고 농산물 생산자단체의 대표를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 농산물 수입 과정에 농산물 생산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적정하고 합리적인 농산물 수급조절을 도모하려는 것임(제15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8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1조에 따른할당관세를 적용하려는 경우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자단체를 지정하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있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5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 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2.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3.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 5.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항
 - 6. 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 농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농산물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급 의 직(職)에 있거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농산물 수급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 단체의 임직원
- 3.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의 대표
- 4.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 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식 견을 가진 사람
-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가격 예시) ①・② (생	제8조(가격 예시) ①・② (현행과		
략)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농		
	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		
령) ① (생 략)	령)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			
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			
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			
령 또는 해양수산부렁으로 정			
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			

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 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 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 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 는 유통조절명령(이하 "유통명 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 ③ ~ ⑤ (생 략)
-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 ① ~ ③ (생 략)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 중 농 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 목의 농산물을 제13조제2항 단 서에 따라 비축용 농산물로 수 입하거나 생산자단체를 지정하 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신 설>

<u>이 경</u>
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5
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농산물의 수입 추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4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
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신 설>

항에 따른 추천 대상 농산물의 수입물량을 증량하거나 수입농 산물에 대하여 「관세법」 제7 1조에 따른 할당관세를 적용하 려는 경우 제15조의2에 따른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생산자단체를 지정하 여 수입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의2(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 ① 농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농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 2.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제 도의 운영·개선 및 대책 마 련 등에 관한 사항
- 3. 제8조제3항에 따른 예시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 4.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 절명령에 관한 사항
- 5. 제15조제4항에 따른 비축용 농산물 수입 결정에 관한 사

항

- 6. 제15조제5항에 따른 추천 대
 상 농산물의 수입물량 증량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할당관
 세 적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에의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
-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농산물 수급조절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3급의 직(職)에 있거나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

<u>원</u>

- 2. 농산물 수급 및 유통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임직원
- 3. 농산물 품목별 생산자 단체 의 대표
- 4. 연구계, 학계 등에서 농산물수급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전문식견을 가진 사람
- ①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